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차인영 의원 발의】



2023. 8.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3호로 2023년 8월 11일 차인영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7조 ~ 제8조)

마. 구매 협조 요청, 공표, 포상(안 제9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8. 8. ~ 2023. 8. 12.):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이고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영등포구 출연·출자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우선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그 외에 관내 소재한 단체 등에게는 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 12조까지는 공표, 표창,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2조의3, 「장애인 복지법」 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